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페이지
1.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기획예산과	1

(2015. 10.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 안 건 명

-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16일(금)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일(월)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 재산의 조성)

[검토보고]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2014.05.28.)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의결 사항 :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가부 결정(의결)
- 나. 출연 필요성 : 마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 마포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마포지역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함
- 다. 2016년도 출연금(예정액) : 3,331,137천원
 - 산출기초 : 2016년도 총사업비 예산 8,528,287천원 × 39%
- 라. 마포문화재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마포구총 예산(특별회계포함)	324,188,011	30,831,784	371,524,376	432,264,798	455,805,132
출연금	1,498,846	1,890,496	1,460,674	2,037,972	2,280,777 (2016년도 이월예산포함)
출연금비율	0.5%	0.6%	0.4%	0.5%	0.5%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2014.5.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을 예산심의와 함께 일괄 처리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함께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출연금 주요내용으로는

- 1) 대상 :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 2) 출연근거
 - ①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3) 출연기관 : (재)마포문화재단
- 4) 우리 구 출연일자 : 2011. 2. 28. 창립 회원(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 5) 출연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마포 구민의 문화 복지진흥 증대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함
- 6) 출연금 추진절차(2단계)
 - ① 구의회 사전 동의 => 2016년도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여부 구의회 사전 가부 결정(의결)
 - ② 구의회 심의 및 확정 => 2016년도 출연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시 출연금액 및 사업 계획 구의회 최종 결정(의결)

○ (재)마포문화재단은 2007. 9.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 건물은 문화센터 및 체육센터 2개 동(棟)에 연면적 19,317㎡, 프로그램은 어린이 유아체능단 운영 등 130여개의 다양한 문화강좌와 헬스장 운영 등 150여개의 스포츠 강좌를 운영하면서 7개 팀에 직원 4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마포구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으로 마포구민에게 많은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포문화재단 비전 2020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마포구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 1)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정비는 물론 직원 성과평가제 도입 등 창의적 경영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 2) 고객중심 시설 및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CS점검단 운영과 편익시설(레스토랑)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하였으며,
- 3) 수준 높은 마포공연예술 공연을 위해 흥대 주차장길 특설무대 등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서 제1회 마포공연예술관광페스티벌(2015.10.27.~11.4)을 개최하고
- 4) 마포 커뮤니티 예술축제<꿈의 무대>(2015.10.31.~11.17)를 개최하고,
- 5) 관내에 소재한 역사공간을 스토리텔링 하여 프로그램화한 “아트 인 스토 페이스”를 상암동 일본군 관사(2015.8.14), 광흥당(2015.9.22), 양화진(2015.10.28)에서 개최한 바 있고,
- 6) 그 밖에 사회공헌 예술 프로그램인 MAC 객석 나눔 “뷰티 프로젝트”와 마포문화총전 “천원의 문화공감”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 7) 수영장 등 총 150여개 강좌도 위탁수업 및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킴은 물론 어린이 대상 “마포아트센터 토요문화학교” 운영 등 총 130여개의 문화예술 강좌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주민들로부터 새롭게 달라진 마포문화재단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음

○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 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 1) 공연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성화를 추구하고, 노후된 플레이맥 공연장을 공연관광 상설 전용관으로 운영하여 재단 수입 증대 및 마포구 문화관광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2) 마포커뮤니티 축제인 꿈의 무대, 청소년 문화 돌봄 체인지업 등 마을 문화예술 교육에 중점을 두고, 천원의 문화공감, 뷔티 프로젝트, 아트 인 스토페이스와 마티네 살롱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양질의 공연전시를 추구할 계획이며,

2. 생활체육분야 활성화를 위해

1) 스포츠 맥 수영 등 170여개의 강좌와 더불어 헬스케어 등 재활운동 중심의 소그룹 맞춤형 강좌 및 특화 강좌를 개설하고,

2) 지역스포츠와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 3차년도 사업 네트워크 단체 참여 및 비수기 시간대를 활용한 단체 위탁 연계 수업을 확장 하는 등 새롭게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각오 하에 전 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마포문화재단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있음

○ 또한 동(同)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마포문화재단 출연금의 예산 편성 전 구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재단이 그 간 잘 운영해 온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진한 사업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비전과 발전 계획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재단이 주민과 함께 하는 한 단계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재)마포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계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5.]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979호, 2014.11.20., 일부개정]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